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4442
----------	-------

제출연월일 : 2025. 11. 20.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실천등”을 “실천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집단으로 하여금”을 “집단이”로, “수행하도록”을 “수행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균형된”을 “균형 잡힌”으로, “개선시키는데”를 “개선하는”으로

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조(책임)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22조의 규정”을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리 방안”을 “관리방안”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청장에 한한다”를 “구청장을 말한다”로, “주요시책”을 “주요 시책”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대하여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요사항”을 “주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을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명한 자가”를 “지명하는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국민건강증진 또는 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공무원

제5조의3제1항 중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책수립”을 “정책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운영지원”을 “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보건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인정한”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혼인전”을 “혼인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을 “제2항에 따른 건강 확인”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2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6조의4제3항 중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한다.

제6조의5제4항 중 “그 밖에”를 “제2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의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2.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

제8조제1항 중 “과다한”을 “지나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주”를 “절주(節酒)”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과다한”을 “지나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표시내용”을 “표시 내용”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중 “하고자 할 때에는”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용기하단”을 “용기 하단”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주구역을”을 “금주구역에 이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설치 방법 등에”를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배事業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으로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로,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연구역을”을 “금연구역임을”로, “한다”를 “하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금연구역임”으로 한다.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설치 방법 등에”를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제4항”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금연구역을 알리는”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금연구역”을 “금연구역임”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배의 제조자”를 “담배의 제조업자”로, “담배갑포장지”를 “담뱃갑 포장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담배갑포장지”를 “담뱃갑 포장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흡연습관”을 “흡연 습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담배갑포장지”를 각각 “담뱃갑 포장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정한 사항 외의”를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 한하여”를 “방법으로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내부에서”를 “내부에”로, “전시(展示) 또는”을 “전시하거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외부에”를 “외부에서”로,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전시하거나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책(製冊)된 정기

간행물 밋”을 “책자 형태의 정기간행물,”로, “신문과”를 “신문 밋”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쓰여져”를 “쓰여”로 한다.

제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연지도원”을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자에 대하여”로, “신고하거나”를 “신고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를 “수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서와 그”로, “지니고 이를”을 “지니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직무범위”를 “직무 범위”로 한다.

제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를”을 “보건교육을”로 한다.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제12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제12조제1항 중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를 “보건의료를 올바르게 이용하고”로, “수준등”을 “수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을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을 “(보건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를 “사람에게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형의 선고를 받고”를 “실형을 선고받고”로, “종료되지”를 “끝나지”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1급 내지 3급으로”를 “1급부터 3급까지로”로, “자격증의 교부절차”를 “자격증 발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

는 자는”을 “1급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을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드는”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단서에 따라”로,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로 한다.

제12조의4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로 한다.

제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의”를 “국민을 대상으로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보건교육에 대한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영양개선)

제15조제1항 중 “영양개선방안을 강구”를 “영양개선 방안을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를 “각호의 사업을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을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하게 하기 위한”을 “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관계인”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려할 수 있도록”을 “장려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를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으로,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를 “각 호의 사업을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2. 「구강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19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제19조제1항 중 “요원”을 “인력”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기발견”을 “조기 발견”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그 운영”으로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검진)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을 “제20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한”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유 없이 검진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1조(검진 결과의 공개금지)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 또는”을 “공제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2)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역”을 “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납부하여야”를 “부담금을

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를 “내야 할 자가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구에 따라야”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로, “없는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4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의 관리·운용 기타”를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로 한다.

제25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광고”를 “금연광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강생활의”를 “건강생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의료관련”을 “보건의료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를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때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때”로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로, “이를”을 “사업”으로, “보조”를 “비용을 보조”로 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7조제1항 중 “자질향상”을 “자질 향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보고·검사)

제28조제1항 중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를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업무”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장부 · 서류 기타의”를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수수료)

제30조제1항 중 “소요되는 경비중”을 “드는 경비 중”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生活保護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3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광고내용의 변경 등”을 “광고내용 변경 등의”로 한다.

제31조의2(벌칙)

제3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7조제1항을”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을 “사유 없이 광고내용 변경 또는 광고”로 한다.

제32조(벌칙)

제33조 본문 중 “사용인 그 밖의”를 “사용인, 그 밖의”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의3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9조제2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3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23조제2항을”로, “허위의”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를 “제9조제3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章 總則	제1장 총칙
第1條(目的)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	제2조(정의) ----- ----- 뜻은 -----. 1. -----이란 ----- ----- ----- 실천 등----- -----. 2. -----이란 ----- -- 집단이 ----- ----- 수 행하게 -----. 3. -----이란 -----

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
을 말한다.

4. ~ 6. (생 략)

第3條(責任) ① (생 략)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
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
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거쳐야 한다.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
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생 략)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 균형 잡힌 -----
----- 개선하는 -----
-----.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른 사람-----
----- 아니 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

4의2. (현행과 같음)

5. -----
----- 관리 방안

6. (생 략)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

----- 구청장을 말한다 -----

----- 주요 시책-----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 자료 -----
-----.

② 제1항-----

-----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5. (생략)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 주

요 사항-----

-----.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

3. 둘 이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

4. 5. (현행과 같음)

6.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1명 및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

-----.

②-----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
한 자가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
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
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
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

----- 지명
하는 사람이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국민건강증진 또는 질병관리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
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
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공무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
----- 필요한 ----.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평가 -----

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생략)

3. 위원회의 운영지원

4. ~ 7. (생략)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9. (생략)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 (생략)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 ⑥ (생략)

第2章 國民健康의 관리

第6條(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

-----.

② -----
-----.

1. ----- 정책 수립-----

2. (현행과 같음)

3. ----- 운영 지원

4. ~ 7. (현행과 같음)

8. -----
-- 지역보건의료기관-----

9. (현행과 같음)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11. (현행과 같음)

12. -----

----- 인정하는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

강생활의 지원 등) ① (생 략)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u>혼인전</u>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u>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생 략) ② 인증을 <u>받고자 하는</u>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6조의4(인증의 취소) ①·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u>취소하고자 하는</u>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 ③ (생 략) ④ <u>그 밖에</u> 건강도시지표의 작	강생활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혼인 전</u> ----- ----- -----. ③ <u>제2항에 따른 건강 확인</u>----- ----- ----- -----.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u>받으려는</u>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인증의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취소하려는</u> ----- ----- -----.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2항에 따른</u> -----
--	--

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필요한 -----

--.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의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2.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8條(禁煙 및 節酒運動等) ①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
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
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
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
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 ①-

-- 지나친 -----

-----.

②-----
-- 절주(節酒)-----

-----.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 대통령령
로 -----
지나친 -----

-----.

⑥----- 표
시 내용-----

-----.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
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
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
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
하여야 한다.

5. · 6. (생 략)

③ (생 략)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
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
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
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하려
는 경우에는 -----
----- 용기 하단-----
-----.

5.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

----- 연
려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금주구역

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 담배事業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에 이를 -----
-----.
-----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②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 -----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

----- 보건복지부령으로 -----

-----.

④ -----

----- 금연구역임을 -----
-- 하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금연구역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26. (생략)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

_____.

1. ~ 2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⑦ 여러 사람

⑧ (현행과 같음)

⑨ _____

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

-----.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
----- 금연구역
일-----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 담배의 제조업자 -----

----- 담배갑 포장지 -----

-----.

----- 담
배갑 포장지-----
-----.

1.·2. (현행과 같음)

3. ----- 흡

<u>연습관</u>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 의 경고문구 4.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 고문구는 <u>담배갑포장지</u>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u>담배갑 포장지</u>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 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u>정한 사 항 외의</u>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 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 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u>방법에 한 하여</u>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u>내부에</u> <u>선</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u>연 습관</u>----- ----- 4. 5. (현행과 같음) ② ----- ----- <u>담뱃갑 포장지</u>----- ----- ----- ----- <u>담뱃갑 포장지</u> ----- ----- -----. ③ ----- <u>규정한 사항 외에</u>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 지 또는 제한) ① ----- ----- <u>방법으로만</u> -----. 1. ----- <u>내부에</u> -----
---	--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
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
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
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
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
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
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
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
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
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
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
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
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
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
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 전시하거나 -----
----- . ----- 외부
에서 -----
전시하거나 부착하여서는 아
니 된다.

2. -----

----- 책자 형태의
정기간행물, -----

----- 신문 및 -----

----- 쓰

<u>쓰여져</u>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3.·4. (생략) ② ~ ⑤ (생략)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생략) ② <u>금연지도원</u>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u>경우</u> 관할 행정관청에 <u>신고하</u> <u>거나</u>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생략)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승인서를 <u>교부</u>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u>수행하는 때</u>에 는 <u>승인서와</u>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u>지니고</u> 이를 관계인에게	<u>연</u> ----- ----- --. 3.·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u> <u>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u> <u>다)</u>-----. 1.·2. (현행과 같음) 3. ----- <u>자에 대하여</u> ----- <u>신고 또</u> <u>는</u> ----- 4. (현행과 같음) ③ ----- ----- ----- ----- ----- <u>발급</u>----- ---. ④ ----- ----- <u>수행할 때에는</u> <u>제3항에 따른 승인서와 그</u> --- ---- <u>지니고</u> -----
---	--

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보건교육을 -----.

第12條(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 보건의료를 올바르게 이용
하고 -----

----- 수준 등-----
-----.

②----- 국
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

③-----
----- 제2
항에 따라 -----
-----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건교육-

-----.

④제1항에 따른 -----

--.

제12조의2(보건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
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2. 삭 제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
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
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
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
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
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
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

----- 사람에게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

1. (헌행과 같음)

3. ----- 실형을 선고받고
----- 끝나지 ----

----- 아니한 사
람

4. ----- 따
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제1항에 따른 -----
----- 1급부터 3급까지
로 ----- 자
격증 발급절차 -----

----.

④----- 1급 자격증을 발
급받으려는 사람은 -----
-----.

⑤----- 제1항에 따
라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할

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생략)

제12조의3(국가시험) ① 제1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⑥ ----- 발급 받은 -----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국가시험) ①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② -----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드는 -----
----- 범위 -----
-----.

③ ----- 제1항 단서에 따라 -----

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第13條(保健教育의 評價) ①보건 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14條(保健教育의 開發等) 보건 복지부장관은 政府出捐研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 法律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
-----.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
----- 국민을 대상으로 한 -----
-----.

②제1항에 따른 -----

-----.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 등) 보건 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

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營養改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2. (생략)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 · 식품섭취 · 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행하는

집 · 개발 및 조사, 보건교육에 대한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영양개선) ①-----

----- 영양개선 방안
을 마련-----
-----.

②-----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보건
복지부령으로 -----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

----- 건강상태
· 식품섭취 · 식생활조사 등 --

-----.

②-----

----- 담당하는 -----
-----.

③----- 하는 ---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
다.

④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
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第17條(口腔健康事業의 計劃樹立
· 施行) (생략)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
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
한다.

1. (생략)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지니고 이를 관계인----
--.

④-----

----- 필요
한 -----
----.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장려하기 위한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
· 시행) (현행과 같음)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 구강질
환 예방과 구강건강 -----
-----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구강보건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

3. · 4. (생 략)

5.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 · 기
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19條(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
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
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②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
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
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
진 및 처방

6. (생 략)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
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3.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대통령령으로 -----
②---- 각 호-----

-----.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 인력 -----

----- 마련-----
----.

②-----

-----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 조기 발견-----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 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시·도건강증진사업지
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20條(檢診)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第21條(檢診結果의 公開禁止)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
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
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용자
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그 운영-----
-----.

제19조의2(시·도건강증진사업지
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필요한 -----
-----.

제20조(검진) -----
----- 경우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제21조(검진 결과의 공개금지) 제
20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한

----- 사람은 -----

----- 사유

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章 國民健康増進基金

第22條(基金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생략)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
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
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
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
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

없이 검진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각 호-----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2. (현행과 같음)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
과·징수 등) ① -----

----- 공제되거나 -----

수한다.

1. (생략)

2. 전자담배

가. (생략)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생략)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 9.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 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 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

3. ~ 9. (현행과 같음)

②-----

----- 명세-----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부담금을 내야 -----.

⑤-----
내야 할 자가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
----- 경우에는 ---

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생략)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⑥----- 제5항에 따라 -----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
----- 대통령령으로 -----

-----.

②-----

----- 경우에는 -----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
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
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 ·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세관장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부담금 부과 · 징수의
협조)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
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 지방
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
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 수
수료 등을 면제한다.

第24條(基金의 관리 · 運用) ①
(생략)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
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
다.

-----.

③-----

-- 그 요구에 따라야 -----.

제23조의3(부담금 부과 · 징수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 중앙행정기관 · 지방
자치단체, 그 밖의 -----
-----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

③----- 제2항-----

----- 대해서는 -----
-----.

제24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
--.

③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생략)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 8. (생략)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 11. (생략)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 각 호-----.

1. ----- 금연광고-----

2. 건강생활 -----
3. (현행과 같음)
4. ----- 보
건의료 관련 -----

5. ~ 8. (현행과 같음)
9. -----
----- 하는 -----
--
10. · 11. (현행과 같음)
12. -----
--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때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을 -----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第4章 補則

第26條(費用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지도·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때 -----
-----.

제4장 보칙

제26조(비용의 보조) -----
-----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 사업을 -----
----- 비용을 보조--.

제27조(지도·훈련) ①-----

----- 자질향상-----
-----.

②----- 필요한-----

-----.

第28條(보고·檢査) ①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생략)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8조(보고·검사) ①-----

----- 인정
하는 경우에는 -----

-----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업무-----
----- 관계
공무원-----
-----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
-----.

②제1항에 따라 -----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현행과 같음)

②-----

-- 하는 -----
-----.

③ -----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30條(手数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
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生活保
護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들
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第5章 罰則

第31條의2(罰則)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
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6. (생략)

----- 소속 기관
-----.

제30조(수수료) ①-----
----- 드는 경비
중 -----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
우에는 노인, 장애인,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

제5장 벌칙

제31조의2(벌칙) -----

-----.

1. -----
----- 광고내용 변경
등의 -----

2. ~ 6. (현행과 같음)

第32條(罰則) 제7조제1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
1조,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1의2. (생략)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

제32조(벌칙) 제7조제1항을 ----

----- 사유 없이
광고내용 변경 또는 광고 ----

-----.

제33조(양벌규정) -----

----- 사
용인, 그 밖의 -----

-----.

제34조(과태료) ①-----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9조제2항을 -----

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3. (생략) 4. <u>제23조제2항의</u>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u>허위의</u>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u>과태료</u>에 처한다. 1. <u>제9조제3항의</u>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3. <u>제28조의</u>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u>허위로</u> 보고한 자와 <u>관계공무원의</u>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 ⑤ (생략)	----- 2. 3. (현행과 같음) 4. <u>제23조제2항을</u> ----- ----- -- <u>거짓</u> ----- -- ②---- <u>각 호의 어느 하나</u>---- ----- <u>과태료를</u> 부 <u>과한다.</u> 1. <u>제9조제3항을</u> ----- ----- ----- 3. <u>제28조에</u> 따른 ----- ----- <u>거짓으</u> <u>로</u>----- <u>관계 공무원</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